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85

발의연월일: 2025. 5. 7.

발 의 자:이인선·강대식·박정하

유용원 · 강선영 · 성일종

박준태 · 김정재 · 고동진

조정훈 · 배준영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.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 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 음.

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.

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(제18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3(내국인 우수 인력의	제18조의3(내국인 우수 인력의
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)	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)
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	①
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	
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	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	
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	
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연구기관 등(이하 이 조에서	
"연구기관등"이라 한다)에 취업	
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	
업일( <u>2025년 12월 31일</u> 이전인	<u>2030년 12월 31일</u>
경우만 해당한다)부터 10년이	
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	
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	
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	
세액을 감면한다. 이 경우 소득	
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	
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	
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	
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	
일부터 계산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